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0일 05시 57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공개공지 등의 확보	3

공개공지 등의 확보

2014.04.17 조회수 722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45
담당부서	건축과
상위법령	건축법 제27조
조례	여수시 건축 조례 제37조제1항
유형	4호 - 기타(부담금징수 등)
등록사유	주택건축도로
법령공표일	완화규제
존속기한	2013-08-14
규제시행/폐지일	2013-08-14
규제내용	제37조(공개공지 등의 확보) ①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장례식장을 말한다. ②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하되 2개소 이내로 설치하고 1개소의 최소너비는 5미터 이상,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1.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: 대지면적의 5퍼센트 2.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: 대지면적의 8퍼센트 3.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: 대지면적의 10퍼센트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44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46

Yeosu Web Contents

